

문서번호	시설안전팀-272
보존기간	년
결재일자	2016.02.29
공개여부	공개

★담당자	팀장	건설안전본부장	사장
			02/29
임재근	박성규	김승호	박현출
협 조			
감 사	감사실	감사실	

' 16년 소방계획서

2016. 2.



서울특별시농수산물식품공사

시설안전팀

가락몰 : 특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
도매권 : 2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

' 16년 소방계획서

(Fire Safety Management Plan)

2016. 2.



서울특별시농수산물식품공사

시설안전팀

목 차

일반계획			
장	절	목 차 명	페이지
제1장		일반사항	1
	1.0	목적	1
	2.0	적용근거	1
	3.0	적용범위	1
	4.0	책임과 권한	1
제2장		예방 및 완화	2
	5.0	일반현황	2
	6.0	화재예방 및 홍보	3
	7.0	자체점검	3
	8.0	일상적 안전관리	3
제3장		대 비	4
	9.0	소방안전관리위원회	4
	10.0	자위소방대 구성 및 운영	5
	11.0	교육 및 훈련	7
	12.0	자체평가 및 개선	8
제4장		대 응	8
	13.0	비상연락	8
	14.0	지휘통제	8
	15.0	초기대응	9
	16.0	피난(유도)	9
	17.0	비상대응계획 및 자위소방활동요령 배부	9
제5장		복 구	10
	18.0	피해복구계획	10
	19.0	피해복구(단기/장기복구)	10
	20.0	피해복구 지원	11

첨부(용량과다로 별첨)

부록 A 관리 · 대응 계획서

[예방]	A-1-1	건축/시설현황
	A-1-2	소방·방화시설 및 위험정보 현황
	A-1-3	법인 소방안전관리자 현황
	A-2-1	자체점검 계획
	A-2-2	일상적 안전관리
	A-2-4	위험작업 허가서
	A-2-5	소방시설[공사/정비]기록부
[대비]	A-3-1	소방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현황
	A-4-1	자위소방대 조직 및 임무편성표
	A-5-1	교육 · 훈련 및 자체평가 계획
	A-5-2	교육 · 훈련 및 자체평가 결과
[복구]	A-6-1	화재피해 복구계획

부록 B 관리 · 대응 절차서

[대비]	B-1	교육 · 훈련 및 자체평가 절차
[대응]	B-2	비상대응계획 수립절차
	B-3	자위소방 활동요령
	B-4	피난계획 수립절차
	B-5	피난안내도 작성방법

참고자료

1	소방훈련 시나리오 구성 체크리스트
2	화재시 행동요령
3	자위소방대 업무흐름(Flow Chart)
4	소방계획서 작성근거 및 별첨
5	법인 소방계획서

부록

' 16년 소방계획서

[Fire Safety Management Plan]

관련근거

- 「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
-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4조

계획서 수립 대상 : 가락시장 시설물

- 가락몰 : 특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
- 도매권 : 2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

계획수립 주기 : 매년

주요 내용

- 소방계획서 관련 일반사항
- 화재예방, 대비, 대응 복구계획
- 소방교육, 훈련, 피난 계획
- 관리대응 계획서, 관리대응 절차

따로붙임 : 2016년 소방계획서 1부.

' 16년 소방계획서

(Fire Safety Management Plan)

제1장 일반사항

1.0 목 적

이 계획의 목적은 [가락시장]의 화재로 인한 재난발생을 사전에 예방·대비하고 화재 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·복구함으로써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.

2.0 적용근거

- (1) 「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0조
- (2) 「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 제24조

3.0 적용범위

- 3.1 이 계획은 화재로 인한 재난의 예방·완화, 대비, 대응, 복구 업무에 대해 적용한다.
- 3.2 이 계획은 [가락시장]의 관계인(거주자 및 근무자, 유통인)에 대해 적용된다.

4.0 책임과 권한

명 칭	주요 책임과 권한
[대표/기관장] 사 장	■ 소방계획을 수립·실행하는 최종적인 책임과 권한을 가진다.
[관리책임자] 본부장	■ 소방계획을 수립·실행하기 위한 관리적 책임과 권한을 가진다.
[안전관리자] 팀장/차장	■ 소방계획을 수립·실행에 대한 실무적 책임과 권한을 가진다.
[근무자] 구 성 원	■ 소방계획의 실행에 참여하고 실천하는 책임과 권한을 가진다.

제2장 예방 및 완화

5.0 일반현황

- 5.1 소방계획 수립을 위한 일반현황 및 사전정보는 다음 내용을 포함한다.
- (1) 건축물 일반(관리)현황
 - (2) 소방시설·방화시설, 전기시설·가스시설 및 위험물 시설의 현황
 - (3) 화재예방을 위한 자체점검계획 및 진압대책
 - (4) 소방시설·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점검·정비계획
 - (5) 피난층 및 피난시설의 피난계획 등을 포함한 피난계획
 - (6) 방화구획, 제연구획 등 그 밖의 방화구조 및 설비의 유지·관리계획
 - (7)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계획
 - (8) 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의 자위소방대 조직과 대원의 임무에 관한 사항
 - (9)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장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사항
 - (10) 공동 및 분임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사항
 - (11) 소화와 연소 방지에 관한 사항
 - (12) 위험물의 저장·취급에 관한 사항
 - (13) 비상연락처 현황
 - (14) 그 밖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
- 5.2 건축물 현황 등은 [부록A-1-1 “건축/시설현황”], [부록A-1-2 “소방·방화시설 및 위험정보 현황”] 참고한다.

6.0 화재예방 및 홍보

- 6.1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안전의식 및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다양한 화재예방 및 홍보 활동을 실시한다.
- 6.2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안전의식 및 안전문화 향상을 위한 활동은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 실시한다.

- (1) [화재 예방 및 홍보자료 배부]
- (2) [홍보 콘텐츠 활용(포스터, 현수막, 영상물, 콘텐츠 등)]
- (3) [화재 및 인명안전 체험행사]
- (4) [기타 안전의식 및 안전문화 향상을 위한 활동]

6.3 우리 기관의 소방안전 환경은 다음과 같이 조성·운영한다.

부착 또는 설치물		부착 또는 설치장소	내 용
홍 보 물	현수막	옥외난로 사용지역	“옥외난로 불법연료 사용금지”
	플래카드	중앙로 게시대	“불나는곳 따로없고 불조심 너나없다”
	입간판	공사 로비	“불나는곳 따로없고 불조심 너나없다”
기 타 홍보물		캠페인 시 배포	화재예방
불조심 홍보방송		차량 순찰 방송	화재예방

※ 법인 소방안전관련 현수막 게시 별도 실시

7.0 자체점검

- 7.1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시설을 점검하고 유지관리하기 위해 「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5조에 따른 자체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.
- 7.2 자체점검을 실시하는 대상의 경우에는 [부록A-2-1 “자체점검 계획”]을 작성·관리한다.

8.0 일상적 안전관리

- 8.1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화재예방 및 피해완화를 위해 일상적 안전관리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.
- 8.2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일상적 안전관리 활동은 다음 내용을 포함한다.
 - (1) [가연물 및 화기(점화원) 취급관리]
 - (2) [소방 및 인명안전시설의 유지·관리]
 - (3) [피난·방화시설에 대한 유지·관리]
 - (4) [전기, 가스, 위험물시설에 대한 유지·관리]
 - (5) [공사장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유지·관리]

8.3 일상적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[부록A-2-2 “일상점검 및 안전관리계획”], [부록 A-2-3.(예방) 일상점검 및 안전관리 일정표] , 위험작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[부록A-2-4 "위험작업 허가서"]를 각각 작성·관리한다.

제3장 대 비

9.0 소방안전관리위원회

9.1 소방 등 재난관리대상물의 안전관리 전반에 대한 심의·조정·의결을 위해 소방안전관리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. 이 경우, 위원회는 연[2회] 이상 개최한다.(재난안전관리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 이를 대체할 수 있다.)



- (1) [위원장 : 기관장](재난안전관리위원회 위원장 : 건설안전본부장)
- (2) [간사 : 시설안전팀장]
- (3) [위원 : 11명](재난안전관리위원회 : 10명)

9.2 소방안전관리위원회의 업무는 다음 내용을 포함한다.

- (1) [화재예방 및 재난안전관리 활동에 관한 사항]
- (2) [소방교육 및 훈련의 실시에 관한 사항]
- (3) [기타 소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]

9.3 소방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[부록A-3-1의 “소방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현황”]을 작성·관리 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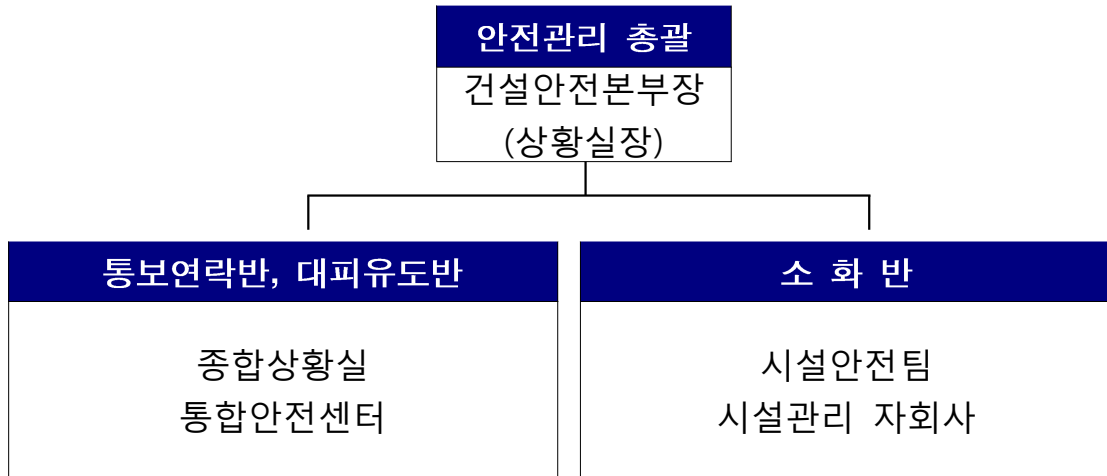
10.0 자위소방대 조직 및 운영

10.1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화재로 인한 재난발생 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「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0조에 따른 자위소방조직을 구성·운영 한다.

주간 상시 근무 시 : 총원 253명



야간, 휴일 근무 시 : 총원17명



※ 각 법인 자위소방대 별도 조직

10.2 자위소방조직은 화재로 인한 재난을 예방하고 대비하기 위해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.

- (1) [화재발생 시 비상연락, 초기소화 및 피난유도]
- (2) [화재발생 시 응급구조 및 방호안전기능]
- (3) [기타 인명 · 재난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치]
- (4) [화재진압활동 중 소방관서 지원 및 협조]

10.3 자위소방조직별 임무는 다음과 같다.

구 분	임 무
대 장	자위소방대를 총괄 지휘·운영한다.
부 대 장	대장을 보좌하고, 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임무를 대행
지 휘 반	대장의 지휘를 받아 다른 반의 임무를 조정하고, 화재진압 등에 관한 훈련계획을 수립·시행, 119신고 등 관계기관 연락
복 구 반	피해시설물 응급복구 및 안전점검 등을 수행
구 호 반	인적, 물적 피해 상황 조사 및 확산 방지, 구조,구급 업무 지원
경 계 반	유통인, 근무자 등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도록 유도 및 시장 질서 업무 수행

10.4 자위소방활동에 필요한 장비를 구비하고 대원을 식별할 수 있는 물품을 지급할 수 있다.

10.5 자위소방조직을 구성하고 임무를 편성하는 경우에는 [부록A-4-1의 “자위소방대 조직 및 임무편성표”]를 작성·관리해야 한다.

11.0 교육 및 훈련

11.1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화재로 인한 재난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비상대응을 위해 「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2에 따른 교육·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.

11.2 교육 및 훈련은 공사 직원 및 법인, 조합, 단체 등 유통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소방관서 등 유관기관 및 도매법인과 합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.

11.3 소방교육은 연2회 이상 실시하며, “소방훈련·교육실시결과기록부”에 기록하고 그 결과를 2년간 보관한다.

회차	일자	내용	비고
1	1월	화재예방 교육 실시	
2	4월	화재 대피 및 소방교육 실시	
3	5월	화재예방 캠페인 실시	
4	8월	소방종합훈련 실시	
5	10월	화재 시 대피요령 실시	
6	11월	소화기 사용 등 소방훈련 실시	
7	12월	화재예방 캠페인 실시	

※ 법인 등 유통인 합동 소방훈련 및 캠페인 별도 실시

11.4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안전관리 책임자를 사전에 지정하여 안전대책을 수립·시행한다.

11.5 교육·훈련 B는 교육·훈련 실시 전 [부록 A-5-1의 “교육·훈련 및 자체평가 계획”]을 작성·관리해야 하며, [부록 B-1의 “교육·훈련 및 자체평가 절차”]에 따라 운영할 수 있다.

12.0 자체평가 및 개선

- 12.1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한 경우에는 교육 및 훈련결과를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미비점을 파악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한다.
- 12.2 교육·훈련 시 다음 내용을 포함한 기록을 작성·관리한다.
- (1) [교육·훈련 계획 및 결과보고]
 - (2) [교육·훈련 참석자 명단 및 활동기록(사진, 영상 등)]
 - (3) [교육·훈련 항목별 평가 체크리스트 및 측정결과]
 - (4) [교육·훈련 실시결과에 따른 개선조치계획]
- 12.3 교육·훈련 및 자체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[부록 A-5-2의 “교육·훈련 및 자체평가 결과”]를 작성·관리해야 하며, [부록 B-1의 “교육·훈련 및 자체평가 절차”]에 따라 운영한다.

제4장 대응

13.0 비상연락

- 13.1 화재로 인한 재난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상황전파 및 신고체계 확립을 위해 비상연락체계를 구축·운영한다.
- 13.2 비상연락 절차는 다음 내용을 포함한다.
- (1) [비상연락처의 조사 및 작성]
 - (2) [비상연락 수립절차 및 방법]
 - (3) [비상연락 체계의 정기적인 업데이트]
 - (4) [기타 비상연락체계에 필요한 사항]
- ※ 법인 및 조합, 단체 비상연락처 조사 및 작성

14.0 지휘·통제

- 14.1 화재로 인한 재난발생 시 화재현장의 원활한 비상대응을 위해 지휘 통제 체계를 수립하고 업무를 수행한다.

14.2 지휘 · 통제 절차는 다음 내용을 포함한다.

- (1) [비상상황에 대한 분석 및 대응방향 결정]
- (2) [자위소방조직 및 활동에 대한 지휘 · 통제]
- (3) [관 소방대와의 소방활동에 대한 협력방안]
- (4) [기타 행정, 자원 및 지원 등에 대한 사항]

15.0 초기대응

15.1 화재로 인한 재난발생 시 필요한 초기대응절차를 수립 · 시행한다.

15.2 초기대응절차는 다음 내용을 포함한다.

- (1) [소화기, 옥내소화전 등 초기소화장비를 활용한 진압절차]
- (2) [출혈, 화상, 골절, CPR, AED 사용 등 응급구조 절차]
- (3) [화재의 확산방지, 위험시설의 정지 및 중요물품 반출절차]
- (4) [기타 초기대응에 필요한 기능 절차]

16.0 피난(유도)

16.1 화재로 인한 재난 발생 시 대상물의 거주자, 근무자 등 유통인, 방문자를 신속하게 안전한 장소로 피난(유도)시킨다.

16.2 피난(유도)절차는 다음 내용을 포함한다.

- (1) [피난 대상 인원]
- (2) [화재경보 및 피난방법]
- (3) [피난유도절차 및 요령]
- (4) [재집결 장소 및 운영절차]

16.3 피난계획을 수립하고 피난안내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[부록 B-4의 “피난계획 수립절차”] 및 [부록 B-5의 “피난안내도 작성방법”]에 따라 운영할 수 있다.

17.0 비상대응계획 및 자위소방활동요령의 배부

17.1 화재로 인한 재난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비상대응 및 자위소방

활동을 위한 계획 및 절차를 수립하여 배부할 수 있다.

17.2 비상대응계획 및 자위소방활동요령은 다음 내용을 포함한다.

- (1) [비상연락 절차 및 요령(비상연락망)]
- (2) [초기대응(초기소화, 응급구조, 방호안전)절차 및 요령]
- (3) [피난(유도)절차 및 요령(재해약자를 포함한다.)]
- (4) [기타 자위소방활동 및 비상대응에 필요한 사항]

17.3 비상대응계획 및 자위소방활동요령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[부록 B-2의 “비상대응계획 수립절차”] 및 [부록 B-3의 “자위소방활동요령”]에 따라 운영할 수 있다.

제5장 복구

18.0 피해복구 계획

18.1 화재로 인한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,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히 정상상태로 복귀하기 위해 피해 복구계획을 수립한다.

18.2 화재로 인한 피해복구계획은 다음 내용을 포함한다.

- (1) [화재발생 개요, 원인 및 피해상황]
- (2) [피해복구 조직(TF) 구성 및 업무분담 계획]
- (3) [화재현장 복구(Clean-Up) 및 시설복구 계획]
- (4) [시설안전점검 및 피해보상계획]
- (5) [복구 예산 및 자원 집행계획]

18.3 화재로 인한 재난의 피해 복구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경우에는 [부록 A-7-1의 “화재피해 복구계획”]을 작성 · 관리한다.

19.0 피해복구(단기/장기복구)

19.1 화재 등 재난대응 또는 발생 직후 정상상태로 복귀하기 위한 단기 복구 활동은 다음 내용을 포함한다.

- (1) [화재원인 및 피해현황 조사]
- (2) [화재현장 복구(Clean-Up)]

- (3) [시설 정비 및 보수절차]
- (4) [임시 숙소 및 영업장 마련]

19.2 화재 등 재난대응 또는 발생 직후 정상상태로 복귀하기 위한 장기 복구 활동은 다음 내용을 포함한다.

- (1) [의료 및 심리치료 지원]
- (2) [법률 상담 및 재정 지원]
- (3) [기반시설 복원 및 안전진단]
- (4) [화재보험처리 및 피해보상]

20.0 피해복구 지원

20.1 신속하고 효율적인 화재피해 복구를 위해 유관기관과 협력하거나 지원기관으로부터 복구활동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.

20.2 피해복구 지원항목 및 내용은 다음사항을 포함한다.

- (1) [구호물품 지원 등 생활 지원]
- (2) [생계곤란자 긴급지원]
- (3) [의사상자 보호]
- (4) [재해구호비 지원]
- (5) [직원의 재해부조금 지원]
- (6) [화재보험 및 가지급금 지급]
- (7) [화상 및 정신 · 심리치료 지원]
- (8) [화재손실에 대한 세제 지원(국세, 지방세)]
- (9) [전기, 가스 등 안전시설점검 및 복구지원]
- (10) [화재피해 유통인 지원]